



문서번호	민원여권과-2834
결재일자	2016.2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40호

주무관	민원행정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혜진	김은경	이창호	김종순	이비오	02/04 정원오
협 조	총무과장		박봉주		
	기획예산과장		이윤영		

- 정보, 공개를 넘어 공유로 -

2016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



성 동 구

(민원여권과)

2016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

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, 소통과 협력의 구정실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운영계획을 수립,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I

추진근거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

II

추진방향

- 행정정보 사전공개 내실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
-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처리를 위한 공개업무 관리 실태 점검 강화
- 정보공개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

III

개요

- 대상범위: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
 - ※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원칙
- 공개형태
 - 청구 공개: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
 - 사전 공개: 청구인의 청구 없이 자발적 공개
 - 사전공표: 중요 정책, 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적극적으로 공개
 - 결재문서 원문공개: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

IV

2015년 주요성과와 반성

□ 사전공표목록 확대 및 공개자료 정비

- 457개(2014년) → 608개(2015년) [구 홈페이지 목록보기](#)

□ 정보공개 FAQ 게시판 개설·운영(2015.08.11. ~)

- 정보공개 처리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게시
- 접속방법: 새울 행정 → 공지사항(FAQ)

→ FAQ 자료실 → 정보공개 FAQ

[바로가기](#)



□ 정보공개 업무처리 시 미흡 사례 발생

- 전결규정 미준수 및 비공개 결정에 따른 불복구제 통지 누락 등
⇒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 강화 (월1회)

※ 2015년 추진실적: [붙임1](#) 참고

V

세부추진계획

1 사전정보공개의 내실화

□ 공개목록: 608개

□ 추진대상: 전 부서(본청, 보건소, 구의회 포함)

□ 중점 추진사항

- 사전정보공개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
- 사전정보공개 주요사항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 인지도 제고
- 사전정보공개 대상 업무 적극 발굴
 -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현장정보 등을 발굴하고, 구체적으로 공개
 - 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

□ 주요 공표대상

-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-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- 기타 부서별로 사전정보공표 가능한 정보

□ 사전공표내용 주기적 정비점검: 반기별 → 분기별(연4회)

- 공표주기에 맞는 최신 공표 내용 업데이트 여부
- 공표항목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게시 여부
- 공표항목에 기간이 경과한 자료의 지속적인 공표 여부 등

□ 추진일정

- 2016. 2월 ~ 4월: 사전공표대상 자료 정비
- 2016. 5월 ~ 6월: 사전공표대상 리스트 작성 및 소관부서 의견 조회
- 2016. 6월 ~ : 사전공표목록 검토 및 내용 보완
- 2016. 7월 ~ : 사전공표대상 목록 관리 및 점검

2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

□ 공개율 목표: 80%이상 (2015년 공개율 70%)

□ 공개대상: 4급 이상 전자결재완료 문서

□ 공개시기: 문서 생산 다음날 자동공개

□ 공개방법: 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오픈

□ 유형별 공개방법

- 공 개: 모든 생산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주의하여 작성
- 부분공개
 - 비공개 사항이 본문에는 없고 붙임문서에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공개로 설정
 - 문서작성 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,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
 - ▶ 기안 시 비공개 사항을 블록 설정하여 비공개 표시(한글2010ver 이상에서 가능)
- 비 공 개: 법령(정보공개법제9조제1항)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

□ 원문공개 모니터링 강화

- 담당자 지정: 각 부서별 1명
- 임 무: 정보소통광장에서 해당부서의 문서를 모니터링 한 후 월1회 자체 점검결과 제출
 - ※ 정보소통광장 원문공개 확인방법: [붙임2](#) 참고
- 모니터링 항목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
 -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설정 여부
 - 비공개 사유가 종료된 문서에 대한 공개 실행 여부 등
- 유의사항
 - 공개됨으로써 이해관계가 따르는 경우 반드시 유의하여 공개 여부 결정
 - 원문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이나 기자 등 문의에 대비 철저
 - 부분공개 설정 시 본문은 공개, 붙임 문서는 비공개됨으로 비공개사항이 본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
 - 비공개문서가 공개되었을 시 즉시 문서정보 변경

3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추진

□ 정보공개 청구민원 최우선 처리

-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: 기존 7일에서 6일로 감축

□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

- 각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모니터링(매일)
 - 정보공개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 안내
 - 정보공개 처리과정 중 미비사항을 해당부서에 즉시 알림
-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결과 각 부서 통보(매월 초)
 -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선정(우수사례 전파)
 - 정보공개 처리규정 미준수 부서는 자체 교육 후 결과 제출
 - ※ 부서 전 직원에 정보공개 처리기한(6일 이내) 등 관련규정 강조

4 정보공개 처리과정 적정성 확보

4-1. 비공개 결정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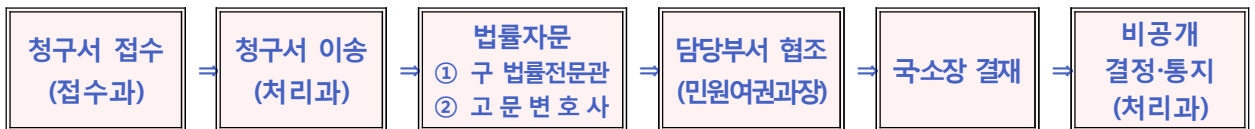
□ 법률전문관 자문 경우

- 내 용: 정보공개 청구중 비공개 결정 시 사전 자문 실시
- 법률전문관 역할
 - 정보공개 비공개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제시
 -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·소송 청구 시 답변서 내용 검토 및 의견 제시

□ 전결권 상향 지속 운영: 과장전결에서 국장전결로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사전검토 유도

□ 비공개사유 명시

- 비(부분)공개 문서는 반드시 공개제한 사유 및 근거 상세히 기재
- 처리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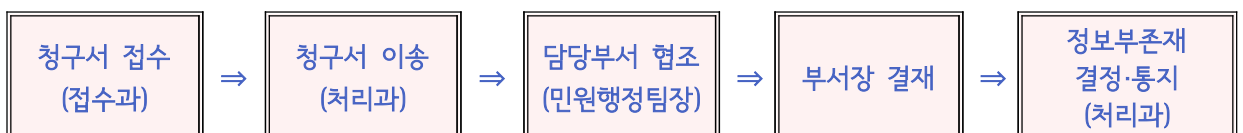
- 비공개(부분공개) 결정 시 불복구제절차 통지 예시

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 제○호에 따라 비공개(부분공개)로 결정·통지하오며, 본 비공개(부분공개)결정에 불복인 경우, 법 제18조(이의신청) 제1항에 따라,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-2. 정보부존재 결정 시

□ 자의적 판단 부존재결정 지양: 정보공개 주관부서 경우

- 타 기관 접수, 인·허가 접수, 지도·감독 관련 정보 등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존재 처리 지양
- 처리절차



○ 정보부존재 관련법령 및 통지 사례

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① 우리구가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경우, ② 정보를 취합·가공해야 하는 경우, ③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폐기한 경우,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)로서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6조제4항에 따라 『정보부존재』로 통지하오며, 본 『정보부존재』 통지에 불복인 경우 『이의신청(령 제11조제2항)』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, 『행정심판』 또는 『행정소송』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5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

□ 정보공개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실시

○ 교육시기: 2회(상반기, 하반기)

○ 교육대상: 정보공개 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

○ 교육방법

- 집합교육: 각 부서 및 동 정보공개담당자 등 참여를 원하는 직원 누구나
- 전달교육: 집합교육 미 참여자(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가 부서원 전달교육 실시)

○ 교육내용

- 정보공개 업무의 필요성 강조
- 원문공개 등 사전공개의 중요성과 문서(공개/비공개) 분류 시 유의사항 안내
- 정보공개 처리절차, 정보공개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교육
- 정보공개 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직원 간 공유

□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

○ 설치근거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

○ 구성현황: 위원장(부구청장)포함 6명 (내부3, 외부3)

○ 심의내용

-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-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○ 심의회 개최: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위주 운영

□ 행정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

- 모니터링 시기: 연 1회(6월)
- 구성인원: 20명(외부10, 내부10)
- 대 상: 구정평가단 임원 및 내부 직원
- 모니터링 항목
 - 성동구 정보공개 홈페이지 이용 등에 대한 만족도
 - 사전정보공개 내용 업데이트 여부 및 검색의 용이성
 - 결재문서 원문공개 메뉴의 구성 등 사용의 편리성 정도
 -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계속 발굴 등

VI

소요예산

□ 총 소요예산: 1,740천원

- 정보공개 심의수당: 70,000원 × 4명 × 4회 = 1,120천원
- 교육자료 제작: 3,000원 × 100부 × 1회 = 300천원
- 위촉장 제작: 6,000원 × 20명 = 120천원
-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: 10,000원 × 20명 × 1회 = 200천원

VII

협조사항

-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(6일 이내 처리) 전부서
- 사전공표 대상 발굴 및 기존 목록 최신자료 업데이트 전부서
- 비공개 및 부존재 통지서 필수절차 이행 철저 전부서
- 원문공개 모니터링 담당자 정비 및 모니터링 철저 전부서
- 비공개결정시 법률자문 신속한 검토 협조 기획예산과
-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시 교육시간 2시간 부여 총무과

- 붙임 1. 2015년 정보공개 추진실적 1부.
2. 정보소통광장 원문공개 확인방법 1부.
3.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1부. 끝.

2015년 추진실적

□ 분야별 행정정보사전공표 목록

구분	계	감사	공보	일반행정	재정세무	문화체육	교육	일자리경제	주민복지	환경공원	주택건축토지	교통건설	토목치수	보건의료위생	의회	도시관리공단
2015	608	14	6	119	35	28	16	37	83	54	30	28	19	78	7	54

※ 2014년도 대비 목록 수 확대(457건 → 608건)

□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실적

2015. 01. 01 ~ 12. 31

구분	계	공개	부분공개	비공개	공개율
건수	16,884	11,438	302	5,144	70%

□ 정보공개 처리현황

○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처리현황(총괄): **공개율 98.3%**

연도별	청구건수			공개율	처리현황				미결정	정보부존재, 청구취하, 타기관이송 등
	계	인터넷	방문등		소계	전부공개	부분공개	비공개		
2014	2,103	1,711	392	98.2%	1,238	1,120	96	22	0	865
2015	2,122	1,727	395	98.3%	1,492	1,347	121	24	0	630

○ 처리기간별 현황: **7일 이내 처리율 83.9%**

구분	계	당일(즉시)	3일 이내	5일 이내	7일 이내	10일 이내	20일 이내	20일 초과
2014	1,238	145	391	331	263	97	11	0
2015	1,492	137	436	370	309	205	34	1

□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

○ 이의신청 현황

연도별	총계	이의신청 처리 결과						계류종
		계	취하	기각	인용	부분인용	각하	
2014	4	4	1	1	2	0	0	0
2015	6	6	1	1	0	4	0	0

○ 이의신청 처리 현황

접수일	이의신청 청구내용	신청 결과	심의회 개최
2015. 4.30.	통반장 및 부서의 매체별 신문 구독 현황	부분인용	X
2015. 4.26.	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	부분인용	X
2015. 9.21.	택시부가세경감세액 지급액	청구취하	X
2015. 9.21.	택시부가세경감세액 지급액	부분인용	X
2015.10.27.	성수1구역 민원해결을 위해 한양개발이 우리 구에 제출한 확약서	기각	○
2015.12.29.	법인택시회사에서 기사에게 지급한 택시부가세경감액 자필서명 내역서	부분인용	○

[붙임2]

정보소통광장 원문공개 확인 방법

1. 서울정보소통광장(<http://opengov.seoul.go.kr>) 접속 후 [결재문서] 클릭
2. 해당 부서의 결재문서 확인 방법
 - (1) ▲세부선택 클릭
 - (2) 성동구 클릭
 - (3) 상세검색 버튼 클릭
 - (4) [부서]로 선택
 - (5) 부서명 입력
 - (6) 검색 클릭

결재문서

"결재문서"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생산된 결재문서를 모아 분류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. 찾으시고자 하는 문서는 '상세검색' 옵션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전체 목록, 복지, 여성 가족, 경제, 안전, 주택 도시계획, 환경, 문화 관광, 건강, 교통, 건설, 세금 재정, 행정

범위선택 ? 전체 서울시 자치구 **1. 세부선택 클릭**

강남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
※ 이외 20개 자치구는 2015년 7월 1일부터

2. 성동구 선택

31 ~ 31 **3. 상세검색 클릭**

상세검색 ▾

검색어 ? 반드시 포함 **5. 부서명 입력**

4. 부서 선택

전체검색 ▾ 반드시 포함 ▾ 질의어 입력

및 전체검색 ▾ 반드시 포함 ▾ 질의어 입력

파일유형 ? 전체 HWP PDF PPT XLS DOC 이미지 압축파일

결재자 ? 전체 시장단(부단체장 이상) 국장급 과장급

부서선택 ?
※ 부서선택은 서울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개여부 ? 전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

6. 검색 클릭